

# 우리나라의 원예시설 단지화 현황

강 상 현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채소과장

## 1. 서론

우리나라 농업경영구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60년대 이전은 식량작물 위주의 자금자족 경영 단계였고, '70년대 후반 특히, '80년대 이후는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상업농 경영이 본격화되는 단계였다. 이같은 변천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량작물의 소비는 크게 감소한데 반해 원예작물의 소비가 급증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94년말 현재 전국의 원예시설 면적은 '80년에 비해 7배정도 늘어나 약 4만2천ha에 달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채소시설이 약 38,000ha로서 전체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원예시설은 주로 도시근교지역에 형성되어 왔으나 지가상승, 지역특화작물육성, 교통여건들의 변화에 따라 도시와 거리가 먼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 2. 원예시설 단지화 현황

단지란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에 관계되는 모든 인적, 물적 요소들이 집단적으로 갖춰져있는 것을 말하겠으나 여기서는 시설자체의 단지화에 대해 논하므로 인적요소 즉, 단지구성원의 조직화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시설면적 규모(밀도), 지리적 연관성 만을 단지구성 기본요소로 파악하였다. 조사통계상 지리적 연관성 기준으로는 시, 군 행정구역 단위를 사용하였다.

### 가. 채소 (표1 참조)

채소단지는 주로 배후에 대형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형성돼 있고 그 규모도 큰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와 거리가 비교적 먼 편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설수박의 경우 함안, 진양, 부여, 의령지역, 시설딸기의 논산은 지역 특화에 의해 집단화한 단지로 볼 수 있다.

시, 도별 시설면적은 경남(8,515ha), 경북(7,363ha), 충남(5,321ha), 경기(5,166ha), 전남(3,777ha), 전북(3,267ha)순으로 많고 강원, 충북의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한편, 전국 221개 단지중 100ha 이상 되는 단지수는 77개(35%)이나, 시설면적 비율은 약 86%이고 500ha이상 대규모 단지수는 21개(9.5%)에 불과하나 시설면적 비율은 약 54%이었다. 또한 100ha미만 단지수는 144개(65%)나 되나 시설면적 비율은 14%에 머물러 지역적으로 집단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화훼 (표2 참조)

화훼단지는 채소의 경우와 같이 대형소비시장 배후에 집단화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의해 단지화한 경우로 파악되었다. 강원도 평창, 충남 서산, 전북 남원, 제주도는 백합, 안개, 서양란 등을 특화하여 단지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시·도별 시설면적은 경기(837 ha), 경남(442ha), 부산(234ha), 서울(225ha), 제주(174ha) 순으로 많고 충북, 경북, 강원은 적은 편이었다.

한편, 전국 214개 단지중 20ha 이상되는 단지수는 25개(약 12%)이나 시설면적비율은 약 63%이며, 100ha이상 대규모 단지수는 5개(약 2%)이나 시설면적비율은 32%정도나 되었다.

또한 20ha미만 단지수는 189개(약88%)였으나 시설면적 비율은 37%에 불과하여 화훼의 경우도 채소와 같이 지역별로 집단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 다. 과수 (표3 참조)

과수 단지는 채소, 화훼의 경우와는 달리 소비시장 인근에 집단화되어 있지 않으며, 품목별 기후, 토질등이 적합한 특정지역에 집단화된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충북 옥천, 영동지역에서는 포도, 제주도에서는 감귤과 파인애플재배를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으며 경기, 강원, 경남 지역은 시설면적이 적다. 특기할 만한 점은 채소, 화훼시설이 많은 경남, 경기지역의 경우 과수시설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 3. 원예시설 지원 사업 현황

정부는 채소, 과수, 화훼 주산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생산,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단지조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

'95년에는 채소 50개소, 과수 120개소, 화훼 15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사업비를 각각 3,355백만 원, 3,862백만원씩 투자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시설채소 530개소, 과수 900개소, 화훼 235개소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채소는 401ha, 화훼는 62ha의 단지를 조성했는데 개소당 평균 규모는 각각 8ha, 4ha 정도이며 화훼의 경우 유리온실비중이 높아(약 50%) 채소의 경우(약 10%)보다 집단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

### 4. 단지화의 이점

원예시설이 여러 지역의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많은 비효율을 수반한다. 반면 단

## 지화 하였을 경우

- 1) 건축비, 시설유지비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제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 2) 생산물의 특화, 기술개발·보급, 자재 공동구입, 시장 정보수집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여 시장 교섭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3)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다.

## 5. 단지화 추진상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화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화에 대한 공감대는 널리 형성되어 있으나 개별농가의 이해·의지 부족, 지자체의 나눠먹기식 사업배정등이 단지화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개소당 사업신청 농가수(시설채소의 경우 평균 30명)가 많아 일정지역에 집단화된 부지확보가 곤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의 경우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0.5개소 단위로 사업을 분할하여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리온실의 경우보다 파이프온실의 경우는 사업신청 농가수가 더 많고 시설면적도 많기 때문에 사업지역이 마을단위 또는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집단화의 잇점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경향이 크다.

## 6. 단지화 추진방향

정부는 시설원예 지원사업 시행시 집단화 추진에 역점을 두므로써 사업자가 원예시설 단지화의 잇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화 추진으로는 첫째, 집단화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둘째, 사업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농협을 추가하여 이들이 집단화된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적영하거나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7년부터 시행계획) 또한, 사업평가 결과 집단화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30%까지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옵션시설로 되어 있는 양액재배시설, 반출도로, 비상발전시설, 변전시설 등을 인센티브로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lt;표1&gt;

채소 시, 도별 시설면적 ('94)

| 시·도 | 계           | 500ha이상                               | 499-300ha         | 299 - 100ha         | 100ha 미만    |
|-----|-------------|---------------------------------------|-------------------|---------------------|-------------|
| 계   | 37,941(221) | 20,524 (21)                           | 3,949(10)         | 8,170 (46)          | 5,298 (144) |
| 서울  | 154(7)      |                                       |                   |                     | 154(7)      |
| 부산  | 1,027(4)    | 944 (강서구)                             |                   | 150(복구)             | 83(3)       |
| 대구  | 207(4)      |                                       |                   |                     | 57(3)       |
| 인천  | 97(4)       |                                       |                   |                     | 97(4)       |
| 광주  | 965(4)      | 832 (광산구)                             |                   |                     | 133(3)      |
| 대전  | 320(5)      |                                       |                   | 246(2)              | 74(3)       |
| 경기  | 5,166(36)   | 2,055(남양주, 고양)                        |                   | 2,207(12)           | 904(22)     |
| 강원  | 774(21)     |                                       | 309 (춘천)          |                     | 465(20)     |
| 충북  | 887(14)     |                                       |                   | 354(청원, 음성)         | 533(12)     |
| 충남  | 5,321(20)   | 2,946(논산, 부여)                         | 771(예산, 공주)       | 1,123(6)            | 481(10)     |
| 전북  | 3,267(14)   | 550(의산)                               | 1,396(정읍, 김제, 완주) | 1,121(6)            | 200(4)      |
| 전남  | 3,777(24)   | 1,167(나주, 담양)                         | 702(순천, 곡성)       | 1,451(9)            | 457(11)     |
| 경북  | 7,363(34)   | 5,098(성주, 고령, 달성, 칠곡)                 | 771(안동, 금릉)       | 642(4)              | 852(24)     |
| 경남  | 8,515(26)   | 6,932(밀양, 함안, 진양, 합천, 김해, 창령, 창원, 의령) |                   | 876(하동, 진주, 고성, 거창) | 707(14)     |
| 제주  | 101(4)      |                                       |                   |                     | 101(4)      |

&lt;표2&gt;

화훼 시·도별 시설면적 ('93)

| 시·도별 | 계          | 100ha이상  | 99-50ha             | 49-20ha    | 20ha 미만  |
|------|------------|----------|---------------------|------------|----------|
| 계    | 2,626(214) | 831(5)   | 371(5)              | 440(15)    | 984(189) |
| 서울   | 225(9)     | 146(서초)  |                     | 43(강남)     | 36(7)    |
| 부산   | 234(5)     | 174(강서)  |                     | 44(금정)     | 16(3)    |
| 대구   | 28(3)      |          |                     |            | 28(3)    |
| 인천   | 42(4)      |          |                     | 23(서구)     | 19(3)    |
| 광주   | 54(4)      |          |                     | 32(광산)     | 13(3)    |
| 대전   | 16(5)      |          |                     |            | 16(5)    |
| 경기   | 837(36)    | 265(고양)  | 274(성남, 하남, 과천, 용인) | 121(5)     | 177(26)  |
| 강원   | 79(16)     |          |                     | 25(평창)     | 54(15)   |
| 충북   | 35(13)     |          |                     |            | 35(13)   |
| 충남   | 151(20)    |          |                     | 32(서산)     | 119(19)  |
| 전북   | 117(20)    |          |                     | 24(남원)     | 93(19)   |
| 전남   | 145(26)    |          |                     |            | 145(26)  |
| 경북   | 47(23)     |          |                     |            | 47(23)   |
| 경남   | 442(26)    | 141(김해)  |                     | 60(마산, 김해) | 144(22)  |
| 제주   | 174(4)     | 105(서귀포) | 97(창원)              | 37(남제주)    | 32(2)    |

&lt;표3&gt; 과수 시·도별 시설면적 ('94)

| 시도·별 | 시설면적     | 주산단지 및 품목  |
|------|----------|------------|
| 계    | 1,189 ha |            |
| 대구   | 2        |            |
| 광주   | 3        |            |
| 대전   | 53       |            |
| 경기   | 6        |            |
| 강원   | 1        |            |
| 충북   | 147      |            |
| 충남   | 50       | 옥천, 영등(포도) |
| 전북   | 67       |            |
| 전남   | 44       |            |
| 경북   | 85       |            |
| 경남   | 27       |            |
| 제주   | 704      | 감귤, 파인애플   |